

A-03

청소년시설의 안전문제와 개선방안

김태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The problems in the establishments for teenagers and the improvement programs

Tae-Hwan Kim

Dept. of Guard & Security, Yong-In University

1. 서 론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의 발달과 20세기 교통 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접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사용에 대한 무지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시설물의 안전기준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에 대한 보완책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의식 또한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생활 활동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공간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논문에서 청소년시설 안전에 대한 현황과 사고사례를 파악, 검토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청소년 시설의 특징

1) Hard적 측면(시설, 법규, 설비 등)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한 수련원, 고시원, 기숙형 학원, PC방, 콜라텍, 등이 한국형 업태유형의 대부분이며, 용도의 성격상 체류인원의 밀도가 매우 큰 구조로서 숙박성 체류형태가 불가피한 용도가 대부분이다. 또한, 규모상으로 보아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각지대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시설이용자가 화재 시 대응상 대처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이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건축, 시설 구조와 같은 형식이다.

2) Soft적 측면(이용자 특성, 공간환경, 문화 등)

청소년의 여가문화 생활이 주로 휴식분산형이나 관람집중형놀이를 중심으로 실외공간 보다 실내공간에서의 정적인 놀이로 인한 공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가선용방법 조사에 의하면 시설이용 빈도가 PC방이나 노래방 이용이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며, 흡연, 음주 및 우발적 이탈행위 등의 사회적, 도덕적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한 행위에서 위험이 노출되고 있으며, 위기시의 대응능력이 미숙한 비성년의 청소년

또는 유소년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초기대응이나 피난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3. 청소년 시설 현황

국가에서 분류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로서는 표 1에서와 같이 주관부서가 뚜렷한 시설로서 민간이나 개인소유의 수련원, 고시원, 기숙형 학원, PC방, 콜라텍 등은 정확한 통계가 있지 않고 시설의 안전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표 1. 청소년 시설의 유형

구 분	계	학교시설	사설학원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개 소	107,902	18,667	66,414	22,147	674
주관부서		교육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 학교시설은 유치원, 초·중·고 학교시설(대학 제외), 2003.03

4. 청소년시설 사고사례와 문제점

1)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1999년 6월30일 01:30경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집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29명(사망 23, 부상 6)의 인명피해 발생, 국립과학연구소 및 수원지방검찰청에서의 조사결과로 서는 모기향불로인한 화재로서 발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인솔교사 등 보호의무자의 무책임이 대형참사를 빚었으며, 유치원 어린이들은 5-6세에 불과하여 사리변별력이 미약하고 화재 등 돌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없으므로 인솔자들이 항상 어린이 옆에서 보호하여야 함에도 아이들만 방치한채 다른곳에서 잠담과 음주를 하였으며 모기향 같은 불씨를 방치하고 옆에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쌓아 놓은 채 인솔 교사가 부재하는 등 안전에 대한 무감각증을 드러내었다. 또한 씨랜드 수련시설은 스티로폼, 목재 등 인화성이 강하고 열전도가 강한 철골구조물로 건축되어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으며, 건축물의 내장을 방화상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마감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건축법 제43조(건축물의 내부마감 재료)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만 한정하고 있음

2) 광주 예지학원 화재사고

2001년 5월16일 수요일 22:30분경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예지학원에서 화재가 발생 32명(사망10, 부상22)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자율학습중인 학원생들중 담뱃불에 의한 화재로 단정되어 졌으며, 문제점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사고 건축물의 일부 휴게실 증축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시청과는 관계가 없어 5층건물의 불법용도 변경 되었으며,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학원 설립을 승인한 시교육청에 있었으며, 건물이 교육용도시설로 승인돼 있기 때문에 5층 창고를 교육용도시설(강의실)로 사용한 것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다. 또한, 일부 경기교육청에서 학원을 점검하면서 급식소의 위생상태만 점검하고 5층 가건물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았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소방서에서 정기점검 당시 5층 창고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 등 소화기 등 만 확인했으나 증축한 창고의 도면을 확인하지 않았다.

3) 천안초등학교 축구부합숙소 화재사고

2003년 3월 26일 23시09분 충남 천안시 성황동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발생 17명(사망8, 부상9)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사고 원인은 전기누전으로 판명 되었으며, 문제점으로는 숙소(컨테이너)에 창문 3개가 설치돼 있었으나 작은 방에 설치된 창문은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에 막혀 유명무실했으며, 큰 방 출입문 쪽에 있는 창문은 신발장과 냉장고로 차단된데다 학생들의 규율통제를 위해 쇠창살이 설치돼 환기와 탈출을 가로막았다. 또한 건물 천장 등에 단열과 보온을 위해 학교 측이 스티로폼을 덧씌워 화재 때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켰고, 전기배선도 허술했었다.

5. 종합적 문제점

1) 안전의식 측면

최근의 참사나 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시설물의 방화관리자, 화기단속책임자의 안전 경각심 미흡하며, 청소년들의 안전대처의 의식이 취약하고 열악한 시설물에 대한 방화점검 소홀시설관리책임자들의 안전책임의식 결여되어 있다.

2) 안전교육 실시측면

청소년 안전교육이 이론에 치중된 교과서적인 교육으로서 위기상황 대처능력부족하며, 주입식교육으로서, 실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공간 및 프로그램의 부족과 안전교육 유관기관과 학교간의 긴밀한 연계체제가 약하며, 화재나 기타 위험 발생시 신고요령이나, 대피 및 초기 진화요령 등 안전교육훈련 부족하다.

3) 안전관리 측면

공교육시설보다 사교육 시설로서 학원, 사립유치원, 보육원 등의 상당부분 시설이 임대시설로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시설또한, 대체로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있고, 대상시설에 비해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상태이다.

4) 법령상의 미비점

시설구조적 측면에서는 2층이하의 학교시설은 내화구조 적용이 제외(건축법시행령 제56조)되고 있으며, 학교시설의 벽·기둥·바닥·주계단 내화구조 기준 미비하며, 4층 이하 학교건물 및 2층 이하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보육·유치원 시설)은 내부마감재에 가연재 사용가능(건축법시행령 제61조)하여 내부마감 재료로서의 불연재 기준이 미비하다. 소방시설 측면에서는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연면적 2,000m²미만의 학교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근거와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설치근거 미비하여 화재시 피해 확산을 초래 할 수 있다.

6. 결 론

청소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정홍보처, 안전전문기관과 공조, TV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전 국민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안전자료보급으로 안전 불감증을 퇴치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나 소방방재청에서는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안전 교육 활성화를 위해선 학교 안전교육 시간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원이나 학원강사 연수교육시 교과과정에 안전교과목 편성·운영하며, 사고발생시 구체적인 행동

요령 등 지침서나 매뉴얼을 발간 보급해야 한다. 또한, 학교관련 제도개선으로서 초등이나 중등학교 운동부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전면금지해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내 학교 및 청소년 시설 안전전담부서 설치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내 「안전전담관리사」 배치와 청소년 시설내 안전담당자 선임을 검토하여야 하며, 학교, 청소년 시설 등 공공시설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에서 '소방관련 기술자격자'로 선임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특히, 유치원이나 보육원 등은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신규 학원의 경우 "소방방화시설원비증명" 제출 후 등록승인(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은 이용자가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 및 경보설비의 설치대상으로 지정하되, 적용할 화재감지기는 모두 연기감지기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소년시설이 도심에서 밀접한 공간일 경우 소방차의 도착이 자연 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소방서나 파출소의 지역내 의용소방재나 자원봉사단체와 연계 상시 훈련이나 네트워크를 구성 1차 진압이나 구조의 역할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성 해 둔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개개인이 안전대처 능력을 가지기 위하여 서울시민안전체험관(safe119.go.kr, 화재·지진·풍수해·붕괴 등 20여가지 가상재난 체험관임)과 같은 지역사회의 안전체험관을 적극 활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소방서 및 안전관련 공사나 공단과 연계한 정기적인 사회 안전교육 실시하며, 소방관서장이 관내 청소년시설 책임자 대상으로 실시 정기적 정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천안초교 화재참사 관련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3.04.
2.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편람)”, 문화관광부, 2004.10.
3. “화성「청소년수련시설」화재 현장방문 조사단 활동보고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방문조사단, 1999.7.1.
4. 박형주외 2인 “청소년 관련시설의 화재안전실태와 개선방향”, 화재소방학회, 제2권 제1호, 2001.